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4월 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708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5조의2제3항”을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사.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2. 보험금 청구 단계

가. 담당 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

가.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 보험금 지급 내역

다.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마.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43조제6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제43조제9항제1호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 이하인 경우”를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제53조제3항제3호라목 중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는 경우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자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거나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을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전환하면서 모집합투자기구에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전”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3호 중 “노인복지시설(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투자자문업”을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 업무, 투자자문업”으로 한다.

제59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구분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하고”를 “회계처리하고”로 한다.

제64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분기”를 “매 분기”로, “다음 달 10일까지”를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8조제5항 중 “제76조제1항제5호”를 “제7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3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의 나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리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다만, 보험설계사 및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보험계약의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	---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제3항·제4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자산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특별계정을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모집합투자기구로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에 관한 특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한 검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2016년 7월 1일 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
 - 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적립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개정이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각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확대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을 축소하여 보험상품 개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컴퓨터 통신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제42조의2제2항 및 제43조 제4항제2호 등)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확인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단계별 설명사항 확대(제42조의2제3항)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보험금 청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담당 부서·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각각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를 제고함.

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사전 신고 대상 축소(별표 6)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아니한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경쟁과 혁신을 유도함.

<법제처 제공>

부 령

●법무부령 제865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